

군산시 고시 제2021-8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17호(2018.02.02.)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비응도동 36-23번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6월 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비응도동 36-2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발전소)사업
 - 나. 명 칭 : SMG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시 설 명	시설 결정		실시계획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면적(㎡)	규모	사용연료
발 전 소	330,613	건고80 1994.03.18.	54,575	100MWx1기	목재펠릿

가. 건축물 세부시설(변경)

구분	당초 (㎡)	변경 (㎡)	비고
동수	8동	7동	
층수	지상3층	지상3층	
건축면적	12,912.24	12,093.84	건폐율 22.16% < 80%
연면적	9,018.80	8,068.71	용적률 14.78% < 30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군산시 임해로 333(소룡동)

나. 성 명 : 에스지씨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불임참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응도동	36-23	잡	160,110.3	54,575	에스엠지 에너지 주식회사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297 (소룡동)	주식회사 한국외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신탁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8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500호(1992.12.1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으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군산교육지원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166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나. 명 칭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창고 및 부대시설) 증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 설 명	결정면적 (㎡)	대지면적 (㎡)	건축계획			비고
				동 수	건축면적(㎡)	연면적(㎡)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32,548.7	32,548.7	당초 9동 변경없음	당초 10,767.89	당초 11,813.83	
					변경 12,186.97	변경 14,353.44	
					증 1,419.08	증 2,539.61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군산시 서해로 259

나. 성 명 : (주)엔아이티 대표 서한철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소룡동	1662	잡종지	32,548.7	32,548.7	(주)엔아*티	소룡동 1662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8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경암동 59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 화력발전소)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경암동 5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화력발전소)사업

나. 명 칭 : 군산발전본부 안전체험장 및 다목적업무시설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부지면적 : 144,962㎡

나. 건축규모(변경)

1) 당초 : 건축면적 24,456.07㎡, 연면적 38,169.52㎡(용적률 산정면적 제외)

2) 변경 : 건축면적 25,064.54㎡, 연면적 39,165.88㎡(용적률 산정면적 제외)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나.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2.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게재 실음생략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4.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신역세권 D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주)청우건설 대표 구본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폴라리스빌딩 (정자동)
 - 나. (주)우산건설 대표 이길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동)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924번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40,147.1m²
 - 라. 건축면적 : 6,852.2272m²(건폐율 : 17.07%)
 - 마. 연 면 적 : 112,306.8222m² (용적율 : 199.99%)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외, 660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660				
84A	민영주택	316	84.9163	25.7947	110.7110	
84B	민영주택	24	84.8681	25.6769	110.5450	
84C	민영주택	64	84.8707	25.6321	110.5028	
95A	민영주택	28	95.3003	28.0313	123.3316	
95C	민영주택	6	95.2547	27.8687	123.1234	
101A	민영주택	153	101.7717	30.3625	132.1342	
101B	민영주택	69	101.9479	30.2721	132.2200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11,462,696천원

차. 사업기간 : 2021년 10월 29일 ~ 2024년 4월 30일

4.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승인일 : 2021.06.21.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93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5.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1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1. 6.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폐지 고시내역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60-26	전라북도 군산시 법 원로 35 (조촌동)	20210625		20100125	군산시법원을 관통하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39-12	전라북도 군산시 서 해로 414 (오식도동)	20210625	가설건축물 신축	20100125	지명을 도로명 으로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 포면 서포리 605-1	전라북도 군산시 나 포면 서포안길 87	20210625	건물신축	20100125	서포리 서포 마을소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 포면 서포리 605-1	전라북도 군산시 나 포면 서포안길 85	20210625	건물신축	20100125	서포리 서포 마을소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 포면 서포리 605-12	전라북도 군산시 나 포면 서포안길 83	20210625	건물신축	20100125	서포리 서포 마을소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 포면 서포리 605-13	전라북도 군산시 나 포면 서포안길 81	20210625	건물신축	20100125	서포리 서포 마을소재	
건물 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선유북길 67		20210625	건물부존재로 인한 폐지	20090508	섬이름에 방위 사용	
건물 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선유북길 67-1		20210625	건물부존재로 인한 폐지	20090508	섬이름에 방위 사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야미도리 53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야미도3길 28	20210625		20090508	섬이름에 서수 번호 사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어은리 1998-1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어은길 6-1	20210625		20070528	어은리 어은 마을 소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이곡리 22-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 읍 이곡신평길 102-12	20210625	건물신축	20070528	이곡리 신평 마을 소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서수리 822-25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하용전길 28-3	20210625		20100125	서수리 하용전 마을 소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서수리 823-1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하용전길 30	20210625		20100125	서수리 하용전 마을 소재	

군산시 고시 제2021-9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 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도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	476	10	국지 도로	354	경암동 소1-110	경암동 대2-4	일반 도로	-	금회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소로 1-476	• 노선신설 - B=10m, L=354m	•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9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1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60	9	보조간선 도로	4,699	옥구읍수산리 1143도	옥구읍선제리 513-5도	일반 도로		군산고-94 (‘09.11.20)	군도1호선
변경	소로	2	960	9	보조간선 도로	4,699	옥구읍수산리 1143도	옥구읍선제리 513-5도	일반 도로		군산고-94 (‘09.11.20)	군도1호선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2-960	소로2-960	일부구간 선형변경	- 군도1호선 도로구역에 맞추어 개설된 도로 기준으로 선형을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96호

군산 요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군산 요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하고 결정 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6월 25일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요죽 공원	근린 공원	오식도동 661	51,596.6	-	51,596.6	건 고 743 (’91.12.07)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공원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요죽공원	오식도동 661	- 교양시설(복합문화센터) 신설 - 도로(소로 변경)	- 공원 내 산업복합문화센터 신축으로 주민편익 증진 도모 및 공원이용 활성화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51,596.6	13359.7	-	-		51,596.6	15105.3	1,373.87	3,018.71		
기 본 시 설	소계	8,498.0	8,498.0			-	8,223.8	8,223.8			-	기존 소로3(진-1) 복합문화센터 편입
	도로	4,048.1	4,048.1	-	-	-	3,773.9	3,773.9	-	-	-	
	광장	4,449.9	4,449.9	-	-	-	4,449.9	4,449.9	-	-	-	
조경시설		-	-	-	-	22	-	-	-	-	22	
휴양시설		83.3	83.3	-	-	44	83.3	83.3	-	-	44	
유희시설		988.3	988.3	-	-	1	988.3	988.3	-	-	1	
운동시설		2,610.0	2,610.0	-	-	-	2,610.0	2,610.0	-	-	-	
교양시설		322.9	322.9	-	-	-	2,342.7	2,342.7	1,373.87	3,018.71	-	복합문화센터 신설
편익시설		857.2	857.2	-	-	-	857.2	857.2	-	-	-	
관리시설		-	-	-	-	57	-	-	-	-	57	
녹 지		38,236.9	-	-	-	-	36,491.3	-	-	-	-	
시설율(%)		25.9					29.3					법정 40% 이하
녹지율(%)		74.1					70.7					법정 60% 이상

4.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총 계			51,596.6	51,596.6	-	-	124	51,596.6	51,596.6	1,373.87	3,018.71	124	
기 본 시 설	소 계		8,498.0	8,498.0	-	-	-	8,223.8	8,223.8	-	-	-	
	도 로		4,048.1	4,048.1	-	-	-	3,773.9	3,773.9	-	-	-	
	1-1	광장	253.6	253.6	-	-	-	253.6	253.6	-	-	-	
	1-2	광장	808.3	808.3	-	-	-	808.3	808.3	-	-	-	
	1-3	광장	102.0	102.0	-	-	-	102.0	102.0	-	-	-	
	1-4	광장	1,279.0	1,279.0	-	-	-	1,279.0	1,279.0	-	-	-	
	1-5	광장	1,385.4	1,385.4	-	-	-	1,385.4	1,385.4	-	-	-	
	1-6	광장	543.1	543.1	-	-	-	543.1	543.1	-	-	-	
	1-7	광장	78.5	78.5	-	-	-	78.5	78.5	-	-	-	

조경 시설	소 계		-	-	-	-	22	-	-	-	-	22	
	②	육각정자	-	-	-	-	1	-	-	-	-	1	
	③	파고라 “가”	-	-	-	-	1	-	-	-	-	1	
	④	파고라 “나”	-	-	-	-	8	-	-	-	-	8	
	⑤	GATE-WALL “가”	-	-	-	-	1	-	-	-	-	1	
	⑥	GATE-WALL “나”	-	-	-	-	1	-	-	-	-	1	
	⑦	GATE-WALL “다”	-	-	-	-	1	-	-	-	-	1	
	⑧	열주	-	-	-	-	8	-	-	-	-	8	
	⑨	상징조형물	-	-	-	-	1	-	-	-	-	1	
휴양 시설	소 계		83.3	83.3	-	-	44	83.3	83.3	-	-	44	
	⑩	등의자	-	-	-	-	25	-	-	-	-	25	
	⑪	평의자	-	-	-	-	19	-	-	-	-	19	
	⑫	스탠드	83.3	83.3	-	-	-	83.3	83.3	-	-	-	
유희 시설	소 계		988.3	988.3	-	-	1	988.3	988.3	-	-	1	
	⑬	모래사장	988.3	988.3	-	-	-	988.3	988.3	-	-	-	
	⑭	조합놀이대 “가”	-	-	-	-	1	-	-	-	-	1	
운동 시설	소 계		2,610.0	2,610.0	-	-	-	2,610.0	2,610.0	-	-	-	
	⑮	게이트볼장	2,610.0	2,610.0	-	-	-	2,610.0	2,610.0	-	-	-	
교양 시설	소 계		322.9	322.9	-	-	-	2,342.7	2,342.7	1,373.87	3,018.71	-	
	⑯	인조석테크 “가”	250.5	250.5	-	-	-	250.5	250.5	-	-	-	
	⑰	인조석테크 “나”	72.4	72.4	-	-	-	72.4	72.4	-	-	-	
	㉔	복합문화센터	-	-	-	-	-	2,019.8	2,019.8	1,373.87	3,018.71	-	
편의 시설	소 계		857.2	857.2	-	-	-	857.2	857.2	-	-	-	
	아	주차장	857.2	857.2	-	-	-	857.2	857.2	-	-	-	
관리 시설	소 계		-	-	-	-	57	-	-	-	-	57	
	⑲	문주 “가”	-	-	-	-	2	-	-	-	-	2	
	㉑	문주 “나”	-	-	-	-	2	-	-	-	-	2	
	㉒	블라드	-	-	-	-	37	-	-	-	-	37	
	㉓	울타리	450.0m	-	-	-	1	450.0m	-	-	-	1	
	㉔	휴지통	-	-	-	-	13	-	-	-	-	13	
	㉕	종합안내판	-	-	-	-	1	-	-	-	-	1	
	㉖	안전휀스	70.0m	-	-	-	1	70.0m	-	-	-	1	
	소 계		38,236.9	-	-	-	-	36,491.3	-	-	-	-	
녹지	녹 지		38,236.9	-	-	-	-	36,491.3	-	-	-	-	

5. 군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군산시 산림녹지과(☎063-454-29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21-9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6. 25.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8-00004호 (2021. 06. 23.)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 ③ 허가목적 : 장자도 푸드존 운영 및 관리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산2-3번지 일원
- ⑤ 면 적 : 225m²
- ⑥ 허가기간 : 2021. 04. 01. ~ 2022.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100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9.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7건, 변경 1건, 폐지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1. 6.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폐지 고시내역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 정동 505-37	전라북도 군산시 쌍 천로 7-30 (개정동)	20210628		20100125	지명을 도로명 으로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 정면 아동리 573-10	전라북도 군산시 개 정면 모갱이1길 120	20210629	건물신축	20100126	지명으로 서수 식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선유도리 336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선유북길 67	20210629	건물신축	20090508	섬이름에 방위 사용	
건물 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신시도1길 12		20210629	건물철거 후에 건물신축	20090508	섬이름에 서수 번호 사용	직권
건물 번호 변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남군산로 1586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신어은길 68-31	20210629	소유자 건물번호 변경 신청	20070528	어은리 신어은 마을 소재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여방리 465-2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여방1길 46	20210629	건물신축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 정면 운회리 150-1	전라북도 군산시 개 정면 운회길 204	20210629		20070528	옛날부터 불려 오던 이름사용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성덕리 125-1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월포길 40	20210629		20070528	성덕마을 소재 의 옛도로이름	
건물 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축동리 183-3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흥법길 77-18	20210629		20100125	축동리 흥법 마 을소재	

군산시 공고 제2021-1339호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28.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2021. 6. 28.~7. 12.(14일간)
2. 대 상: 도로명 부여 로급 1개(미룡동 개설도로)
3.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붙임 참조
4. 도로의 길이: 붙임 참조
5. 도로명 및 부여사유: 붙임 참조
6.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 가. 기 간: 2021. 6. 28.~7. 12.(14일간)
 - 나. 방 법: 서면(방문, 우편 및 팩스(063-452-6929)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다. 서 식

연번	도 로 명	의견제출사유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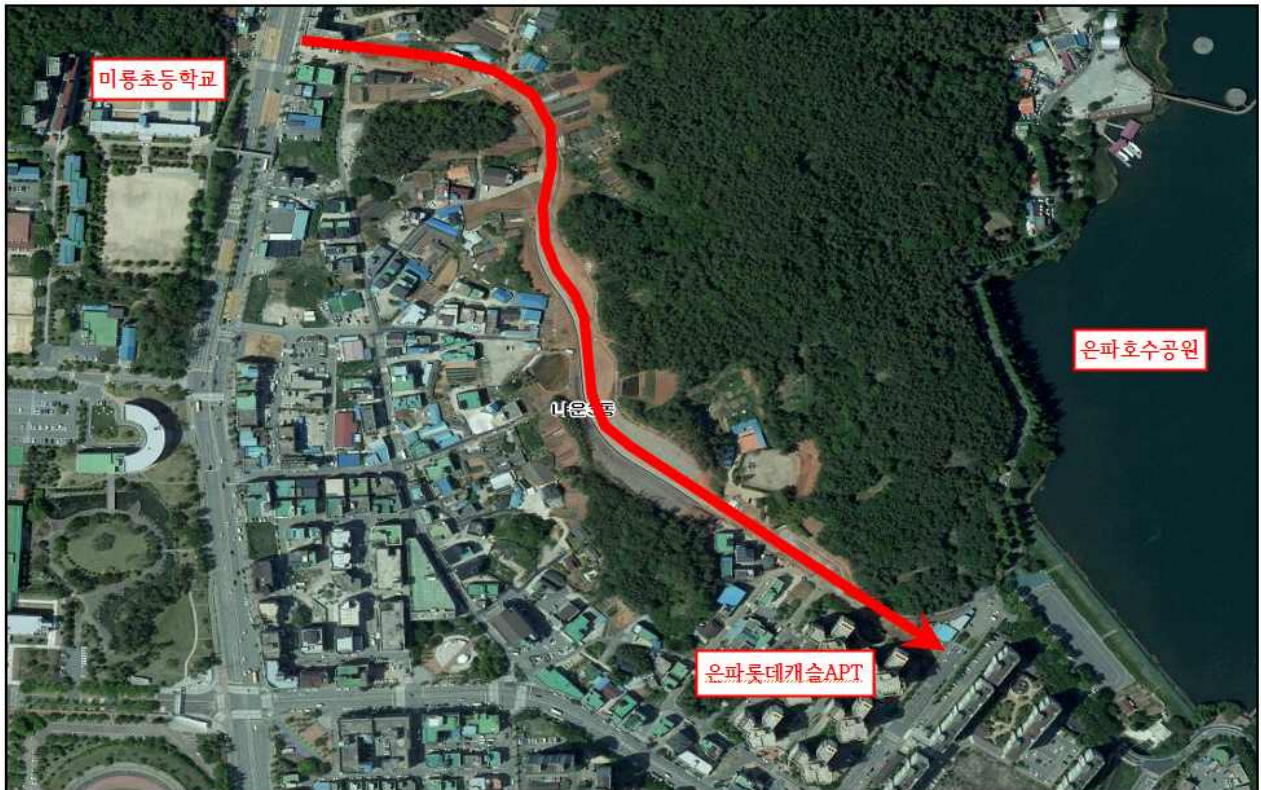
7. 도로명 부여 절차

가.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군산시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의결 → 도로명 고시

8. 기 타

가. 문의사항: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계(☎063-454-3983)

도로명 부여 도면



도로명 부여 조서

순번	관할 행정구역	예비 도로명	위계	시작점	끝지점	도로 폭 (m)	도로 길이 (m)	기초 간격	시점	종점	도로명 부여사유
1	나운3동	은파로	로	미룡동 442-3	미룡동 59-145	19	907	20	1	92	군산 은파호수공원의 지명을 적용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일

군산시 예규 제40호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군산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군산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군산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보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군산시장 귀하					

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상

【별지 제3호 서식】

[illegible]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illegible]